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ugust 21,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EU 회원국의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 입법

유럽연합(이하 "EU")의 국가별보고서 공시지침 (이하 "EU 국가별보고서 공시지침")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어, EU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중 특정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BEPS 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내용 중 일부 정보의 공시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EU 국가별보고서 공시지침은 각 EU 회원국들이 2023년 6월 22일까지 입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 회원국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EU 국가별보고서 공시지침은 2024년 6월 22일 이후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각 개별 회원국은 조기 도입도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국가별보고서 공시의무 규정은 과거 2개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EU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또는 EU 회원국 외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중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유럽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 EU 회원국에 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다음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시
 - 자산총계 4백만 유로 이상
 - 순매출액 8백만 유로 이상
 - 평균 임직원 수 50명 이상
- EU 회원국에 지점을 보유한 경우 순매출액 8백만 유로 이상

의무공시내용

EU 국가별보고서 공시지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최종 모회사의 사명과 해당 사업연도, 보고서 작성에 쓰인 통화 기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최종 모회사의 연결 대상 관계사 목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세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사업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임직원 수
- 순매출액(관계사 매출 포함)
- 세전 이익 또는 손실
- 발생기준 납부세액
- 현금기준 납부세액
- 유보이익

보고 대상 사업연도의 발생기준 납부세액과 현금기준 납부세액의 차이가 전년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은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른 기존 국가별 보고서와는 달리 자본금 및 유형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된 의무공시 정보는 다국적 그룹의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 EU 회원국과 조세 목적을 위한 EU 비협조국 목록(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의 부록 1(비협조 국가) 또는 부록 2(주의 국가)에 포함된 국가들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비협조국 목록 부록 1 또는 부록 2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국가에 소재한 관계사의 정보는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로 보고해야 하는 OECD BEPS의 국가별 보고서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공시 방법

EU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회사 및 지점의 정보만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EU 외 국가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이하 "비 EU 모회사")로부터 그룹 전체의 정보를 수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비 EU 모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 EU 모회사로부터 공유 받지 못한 정보 외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에 따라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은 소재하는 국가의 상업등기부에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EU 내 복수의 법인 및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비 EU 모회사가 한 법인 또는 지점을 대표로 지정하고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규정을 이행한 경우, 기타 법인 또는 지점은 별도로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공시 의무를 위해 웹사이트 게시된 보고서는 최소 5년간 게시되어야 합니다.) 단, 각 EU 회원국별 입법 내용이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재 국가별 입법 내용 및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EU 회원국별 자율 규제

EU 회원국은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을 내국법으로 입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채택 여부에 자율성을 갖습니다.

- 예외 조항(Safeguard clause): 비협조 국가 소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할 수 있음
- 웹사이트 게시의무: 보고서가 EU 회원국 소재 상업 등기부 웹사이트에 공시되어 있고, 누구나 무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비EU모회사가 회사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을 면제하는 조항을 도입할 수 있음

다만, EU 회원국별 공시 지침의 입법내용이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바, 상기자율 규제가 모든 EU 회원국에 입법이 될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은 사업연도 말 이후 12개월 안에 조세 관련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말인 회사들은 2025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6년 12월 말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단, 이는 각 회원국 입법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 입법 현황:

- 입법 완료: 총 11개국(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 법안 초안 공표 완료: 총 5개국(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 입법 절차 미이행: 총 11개 회원국

EU 회원국 내 주요 국가의 입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코: 법안 초안 공표

체코는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의 내용과 유사
- 공시 대상 지점 기준: 과거 2개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약 830만 유로(2억 CZK) 초과
- 예외 조항 채택 고려
- 웹사이트 게시에 대한 면제 조항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프랑스: 입법 완료

2023년 6월 21일과 22일, 프랑스는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과 관련한 시행령 및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의 내용과 유사
- 공시 대상 지점 기준: 순매출액 1,200만 유로
- 예외 조항 채택
- 정보 공시대상 회사 소재국 범위의 확대: EU 회원국 및 비협조국을 포함하여 유럽경제지역(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소재 회사의 개별 공시 필요
- 언어: 프랑스어
- 국가별보고서 공시의무 미이행 회사에 대한 강제 공시 소송 가능
- 공시의무는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독일: 입법 완료

2023년 6월 21일, 독일은 독일 의회와 연방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에 따른 내국법을 공표했습니다.

-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의 내용과 유사
- 예외 조항(Safeguard clause) 채택
- 정보 공시대상 그룹은 자회사 및 지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정보를 최대 4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EU 모회사의 웹사이트 게시 면제 조항 적용
- 공시 의무 미이행시: 250,000유로의 행정 벌금 부과 가능
- 공시의무는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슬로바키아: 입법 완료

슬로바키아는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완료하였습니다.

-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의 내용과 유사
- 예외 조항(Safeguard clause) 미적용
- 비EU 모회사의 웹사이트 게시에 대한 면제 조항 미적용

KPMG 의견

EU 회원국들은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에 따라 내국법 제정시, 순매출액 기준을 최대 1,200만 유로, 자산 기준을 최대 600만 유로까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비EU 다국적기업 그룹은 EU 회원국에 소재한 자회사 및 지점의 국가별보고서 공시 여부를 검토할 때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도입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소재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지침 도입 여부 및 적용 대상 사업연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7707, 2023.05.31

제목: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 부분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구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설비 등을 제조·판매·설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미국, 인도, 베트남, 독일 등에 11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고 주된 매출은 BBB(주), AAA(주) 등 제3자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
- 청구법인은 2016 ~ 2020년 중 AAA(주) 베트남 현지법인과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해외거래처” 및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를 베트남 현지로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베트남 현지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재조립, 설치, 제어시스템 세팅, 검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매출 전부를 베트남 세법에 따른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 각 공급 유형별로 다른 세율(물품대금의 1%, 설치용역대금의 5%, 소프트웨어 추가분의 10%)을 적용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
- 청구법인은 2016 ~ 2020년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에 관련 세액(외국인계약자세)을 납부하였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신청하지 못하였다며, 2022.3.30. 처분청에 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제기
- 처분청은 쟁점매출이 “제품구매” 부분과 관련된 설치 “서비스구매” 부분으로 구분된다며, 서비스구매 부분은 청구법인의 베트남 현지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인정하되,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바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거부하는 등 하여 2022.5.3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에 심판청구 제기

2) 쟁점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거래처에 납품한 제품 관련 매출이 현지 고정사업장(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쟁점매출 전체를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하나의 국외원천거래로 봄이 타당</p> <p>쟁점매출은 납품할 제품을 최초로 국내에서 설계·(1차)조립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검수·재조립 및 설치·세팅 과정을 거쳐 완료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거래로서,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로 인위적으로 나눠 각각 달리 취급할 수 없음</p>	<p>1) 현지에서 쟁점사업장을 통해 직접 공급한 서비스구매 부분에 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함</p> <p>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하나의 거래로 주장하나, 계약서상 제품구매 부분과 서비스구매 부분의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구매의 경우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이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수출되는 반면, 서비스구매 부분은 제품구매 이후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이들 거래는 각각 명확히 구분됨</p>
<p>2)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인세액 계산 시 감안되어야 함</p> <p>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서비스구매 부분은 물론 제품구매 부분까지 베트남당국에 관련 세액(외국인계약자세) 납부</p>	<p>2) 쟁점사업장은 제품이 구매된 이후 설치와 관련된 용역(서비스구매)을 공급하기 위한 장소로 봄이 타당</p> <p>해당 제품은 베트남 통관을 거치자마자 쟁점해외거래처에 곧바로 인도되는바, 쟁점사업장을 거쳐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p>

4) 판단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의 전부가 베트남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하나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베트남 당국에 납부한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 부분과 관련된 “서비스구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수령확인서를 발행하고(제2조), 판매자는 제품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서비스는 구매자의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제1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구매가 먼저 이행된 다음,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서비스구매(설치용역)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는 각 거래의 성격, 공급시기, 거래가액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달리하여,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데, 쟁점계약에 따르면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는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도 베트남 당국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할 때, 이들 거래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만약, 청구주장처럼 이들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면, 쟁점매출의 구성비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구매 부분은 제품구매 부분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매출 전부를 제품구매로 봄이 타당),

-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베트남 당국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고, 쟁점계약 제3조에서도 외국인계약자세를 판매자(청구법인)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직접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자진 납부한 것이어서, 해당 금액이 외국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었음을 전제로 당연히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 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베트남당국에 자진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핵심 근거 법령

-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1호로 개정 전)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03 관세

2023.07.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 수정신고에 따른 혜택 상향 예고

2023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함

1) 개요

- 금번 개정안은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 또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개정함
- 금번 개정안 중 주요 개정 사항과 그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2)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_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A. 개정 이유

개정 이유
○ 납세자는 신고·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정확한 관세부과가 곤란한 상황 발생
○ 특히, 다국적기업은 자료를 해외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자료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

B. 개정 내용

- 신고·제출한 자료 뿐 아니라 신고·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함

현행	개정안
<p>관세법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한다.</p>

C. KPMG’s Comment

- 개정안이 관세법에 반영될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현행 부과되는 과태료(제277조 과태료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에 따른 벌금(최대 2,000 만원, 최소 300 만원) 부과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전가격)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구비 필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수정신고에 따른 혜택 증가 _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안 제42조의2제1항)

A. 개정 이유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음

개정 이유
○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및 국세기본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가산세 경감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

B. 개정 내용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함

현행	개정안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중략)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생략)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 ----- -----.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가. ----- ----- - 3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나. ----- ---- 1년 ----- ----- 100분의 20
<신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C. KPMG's Comment

- 개정안이 관세법에 반영될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이 납부 기한의 초과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

초과기간	현행	개정안
6개월 ~ 1년	20%	30%
1년 ~ 1년 6개월	10%	20%

1년 6개월 ~ 2년

10%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